



제344회 정례회

2015.12.04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윤 홍 창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5년 11월 23일

○ 회부일자: 2015년 11월 24일

3. 제안이유

참여와 개방·공유를 목표로 충청북도교육청과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‘언론’ 및 ‘언론사’에 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

나.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언론을 통하여 시행하는 소통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라. 준용 규정 명시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충북도교육청과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 간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,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안 제3조에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, 안 제4조에 언론을 통하여 시행하는 소통 활성화 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
-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, 조례제정을 통하여 언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지출 근거가 좀 더 명확히 이루어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성이 강화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29조(기부·보조의 제한)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제4조(보조대상 사업) 교육감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,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충북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
- 언론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행사
- 언론을 교육특강 및 학술·문화·예술·체육 행사
- 언론을 통한 독서·토론·미디어·진로·현장체험
- 언론을 통한 교육 정보 제공
- 교육감이 언론을 통한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

2. 관련 조문

- 제4조 보조금 지원

3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비 고
언론을 통한 교육·학예 사업 지원	250,800	250,800	250,800	250,800	250,800	보조금 지원
계	250,800	250,800	250,800	250,800	250,800	

나. 재원조달방안 : 자체 재원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홍창 의원
연락처	043-220-5079

5. 2016년도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전 체		
	계	국비	지방비
계	250,800	-	250,800
언론을 통한 교육·학예 사업 지원	250,800	-	250,800